

양형위원회 소위원회
심의 결과 보고

제 출 자

여상훈 양형위원회
소위원회 위원장

I. 경과

[회의 일시·장소]

소위원회 제21차 회의

일시 : 2012. 5. 30. (수) 11:30 ~ 14:40

장소 : 가연

[참석위원]

여상훈(위원장), 백종수, 이상원, 이태섭, 임성근(위원은 가나다순으로 표시)

[진행방식]

- 심의대상을 양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회부한 ① '증권·금융, 교통, 지식재산권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'의 건, ② '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'의 건으로 정함
-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증권·금융, 교통, 지식재산권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의 논의 결과 도출된 쟁점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소위원회에서 각 쟁점별로 심의·진행

[심의대상]

구 분	주무전문위원
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(수정본)	최형표
●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●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안 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- 증권·금융, 지식재산권 범죄군	최형표 최형표 심재철, 조석영
●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●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	함석천 함석천
● 폭력범죄 양형기준 공청회·의견조회 검토 ●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- 폭력 범죄군	함석천 함석천 심재철, 조석영
●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● 선거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●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(IV)	함석천 최형표 심재철, 조석영

○ 대상범죄별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

II. 교통, 증권·금융, 지식재산권,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

1. 교통범죄 양형기준안

가.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

(1) 권고형량범위에 벌금형을 추가할지 여부

- ‘교통사고 치상’, ‘교통사고 치사’, ‘치상 후 도주’ 유형의 감경 영역에 벌금형을 추가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

⇒ 기존의 양형기준은 모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 이탈이 아니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추가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

나. 양형인자표

(1) “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”

- “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”로 표현을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

(2) “호의에 의한 무승동승자인 경우”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

- 현행안대로 일반감경인자로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

(3) “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”

- 특별감경인자인 “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”의 예시에서 “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”을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

2.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안

가.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

(1) ‘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’의 형량범위를 ‘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’의 형량범위보다 상향할지 여부

- 특경범위반(알선수재)죄와 특경범위반(중재 등)죄는 법정형이 거의 같고(징역형은 동일), 과거의 실제 선고형 분포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량범위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지는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됨
- 다만,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중 조직적인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는 경우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행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

나. 실행권고사유

(1) 집행유예 기준의 실행권고사유에 “부정거래”를 추가할지 여부

- 실행권고사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,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현행안과 같이 “시세조종”만을 실행권고사유로 두기로 의결하였으므로, “부정거래”를 실행권고사유로 추가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
- 다만, 부정거래행위 중 행위태양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실행권고사유 반영 여부를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

3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

-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전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서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지 아니함

4. 폭력범죄 양형기준안

가. 양형인자

- (1) “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상해”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

-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

- (2) “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범행”을 특별가중인자 중 “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”의 예시로 추가할지 여부

- 예시로 추가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

- (3) “계획적 범행”을 일반가중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변경할지 여부

-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“계획적 범행”을 일반가중인자와 특별가중인자 중 어느 쪽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전문위원단에 의뢰

Ⅲ.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결과

1.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

가.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3유형

-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3유형인 “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”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벌금형 하한을 원안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뉨

※ ‘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’의 형량범위표 원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당내경선 관련 매수	- 8월, 50만원 - 300만원	4월 - 1년	8월 - 2년
2	일반 매수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	- 10월, 100만원 - 500만원	6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3	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	4월 - 1년, 200만원 - 700만원	8월 - 2년	1년 - 3년
4	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	6월 - 1년4월, 500만원 - 1,000만원	10월 - 2년6월	2년 - 4년
5	당선인에 대한 매수	8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6월 - 5년

[제1안]

다수 의견(여상훈, 이상원, 이태섭, 임성근) : 150만 원으로 하향

- 감경영역 벌금형 하한을 200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더 많아 특별조정을 거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어, 유사한 사안에서 기부행위로 기소되는 경우와의 형평성이 문제됨
- 제3유형 ‘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’의 법정형 상한(1,500만원)이 제2유형 ‘일반 매수’의 법정형 상한(1,000만 원)의 1.5배에 해당하므로, 감경영역의 하한 역시 제2유형의 하한 100만

원의 1.5배인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

- 감경영역 하한을 150만 원으로 하더라도 특별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기준에는 영향이 없음

[제2안]

소수 의견(백종수) : 200만 원 유지

- 후보자에 의한 매수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야 하며, 극히 예외적인 일부 사례를 상정하여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형량구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음
-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사례는 양형기준 이탈로 처리하면 됨

나.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4유형

-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4유형인 “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”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벌금형 상한을 원안인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의견 일치
- ⇒ “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”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3,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에 더욱 부합하도록 벌금형 상한을 상향시킴

2. 양형인자

가.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

(1) ‘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’

- ‘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여 기준으로 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뉨

다수 의견(여상훈, 이상원, 이태섭, 임성근) : 금액 기준 반대

- 현재로서는 기준이 될 특정한 금액을 정할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, 추상적인 형태로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
- 다른 범죄에 대한 기존의 양형기준 역시 “이익이 경미한 경우”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임
- 금액 기준을 정하면, 예컨대, 10만 원은 경미하나 11만 원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등 양형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됨

소수 의견(백종수) : 금액 기준 찬성

-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법관이 양형인자를 넓게 해석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 있음

(2) ‘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’

- ‘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’의 양형인자 정의부분 중 밑줄 친 “상대방의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”라는 부분을 현행안과 같이 유지하자는 견해와 “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금품 등 요구”로 수정하자는 견해로 나뉨

※ 양형인자의 정의

▶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

-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,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선거인,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
-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수 의견(여상훈, 이상원, 이태섭, 임성근) : 현행안 유지

-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상대방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요구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행위에 나아간 경우는 감경의 필요가 있는데, '지속적이고 집요한 요구'가 있었던 경우에만 감경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이러한 사안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 있음
- 뇌물수수죄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'적극적 요구'가 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고려할 때 현행안과 같이 '적극적 요구' 정도로 정의하면 충분

소수 의견(백종수) : 현행안 수정

- 적극적 요구라고만 하면 우연한 기회의 일시적인 요구까지도 모두 포함되게 되어 양형인자의 확대 적용 우려됨
- 뇌물수수죄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형인자를 정의할 이유 없음

○ 논의결과

- 소수 의견이 우려하는 바를 고려하여 '적극적 요구'라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하기로 함

(3) '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'의 추가 여부

- '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'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

다수 의견(여상훈, 이상원, 이태섭, 임성근)

- 당락의 표차이가 작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
- 선거경합이 매우 치열하여 매수행위에 의하여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면 특별가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,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형인자로 설정하여도 실효성이 없음

소수 의견(백종수)

- 선거가 치열하고 경합이 심할 경우에는 유권자 매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,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선거가 치열하고 경합이 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유권자 매수행위를 가중처벌함이 타당

○ 논의 결과

- ‘당락의 표차이가 매우 작았던 경우’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는 아니하되, 다만, 선거의 경합이 매우 치열하여 매수행위가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현행 가중인자의 정의 부분의 예시에 추가하는 방법 등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

(4) ‘신문·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’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

- ‘신문·방송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’의 경우 행위불법이 큰 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 매수와 비교할 때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
- 다만,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함

나. 후보자비방·허위사실공표 유형

(1) “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”의 예시에서 ‘SNS(페이스북, 트위터 등)’를 삭제할지 여부

- ‘SNS’의 매체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을 유지하되, ‘SNS’의 예시 중 ‘유튜브(Youtube)’는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